

04. 원료 제조물의 범위

원료·제조물

그 범위를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유해성이 없는 경우(승강기, 자동차 등)도 있으나, 이러한 것도 관리상 결함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이 됨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은 원료 및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재난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05.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법 부칙 제조 제항)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부터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0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여

0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법 제10조)

※ 사고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며(법 제10조 및 제11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됨(제15조)

중대산업재해의 제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별하면서,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있음

- 근로자 2명·시민 9명이 부상을 당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2명(중대산업재해는 부상자 2명 이상)
- 근로자 1명·시민 9명이 부상을 당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10명

03. 경영책임자의 범위

책임의 주체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보다 넓은 개념임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법 제2조 제9호 가목)

* 통상적인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06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확보·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및 대응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것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계획서 구성 표준안

① 사고개요 ② 조사내용 ③ 사고원인 분석 및 결론 ④ 재발방지 대책 ⑤ 향후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 등의 이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표준안

① 명령사항 확인 ②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③ 이행조치 실시 ④ 재발방지 대책 ⑤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사후조치, 교육실시 점검 및 사후조치 의무를 부담”

점검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상 취급하는 원료·제조물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령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교육실시 점검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점검에 따른 조치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불이행 사실 발견 시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함

0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인력확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것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 인력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갖추고 해당 인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전·보건 업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 시설 및 장비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교육, 관련 서류작성 및 보관 등이 이에 해당함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징후발생 시 대응 업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①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업무
- ②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업무
-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을 위한 업무
-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등의 업무
- ⑤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의 업무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 예산확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1)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예산은 ① 인건비, ② 시설·장비 확보·유지관리비, ③ 안전 점검 비용, ④ 기타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음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예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담함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3. 업무처리절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1) 대상

구분	원료 또는 제조물	구분	원료 또는 제조물
농약관리법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고압가스법	독성가스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비료관리법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약사법	의약품, 의약품외, 동물용의약품·의약품외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화약류 단속법	화약류

● 소상공인은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음.

2)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신고 및 조치 업무처리절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중대시민 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시행,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①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며, 안전보건 담당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담함

②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 및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적·공개적으로 마련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알게 된 경우 해당 요인을 관련 사업자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신고 또는 조치요구 시, 안전보건 담당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을 실시함. 만약 신고에 의한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도 조치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유해·위험요인이 심각한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함

3)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신고조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조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 또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해야 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사항

-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 현황-피해확산 현황, 현장 응급조치 현황, 대피 현황 등 ③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Q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 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됨

Q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될 수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따라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Q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무엇인가?

A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Q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의 점검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

A 위탁점검도 가능함.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점검에 해당함. 다만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Q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긴급조치 의무] 사업주 등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생산·제조 사업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판매·유통업자는 즉시 해당 원료·제조물의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유통된 원료·제조물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 의무] 사고발생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신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협조 의무]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업자는 다음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나 유관기관이 상황확인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